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서윤기 의원 외 42명
- 나. 의안번호: 제1659호
- 다. 발의일자: 2020. 7. 13.
- 라. 회부일자: 2020. 7. 14.

2. 제 안 사 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과태료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2020년 4월 2일, 현재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맞지 않는 62개 자치법규의 96개 조항에 대한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중 현행 조례 관련 사항〉

연번	인권영향평가 항목	개정 권고 조항	권고사유
6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	20	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조항)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

- 이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누락되어 있는바 시민들의 구제권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조항)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구제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음.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관련 용어를 “이의신청”이 아니라 “이의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서울시는 현행 조례 제5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중 공해차량제한 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해 처음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하고 이후에 다시 위반할 경우 회당 20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고 있음.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8년에 447건, 2019년에 4,285건, 2020년 7월까지 5,216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의신청 건수도 2018년 47건, 2019년 115건, 2020년 7월까지 515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 현황〉

과태료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6월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과태료	447건	4,285건	5,216건	
	이의신청	47건 (10.5%)	115건 (2.7%)	515건 (9.9%)	
	이의신청 회신	재부과 및 감액	26	41	19
		미부과	4	2	0
		진행 중	17	72	496